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밀특허제도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추가〉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67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1. 우리나라 비밀특허 제도 운영 현황	7
2. 주요국 비밀특허 제도 운영 현황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3.
3. 회부연월일 :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 및 산업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기술뿐 아니라 경제·산업적 중요 기술까지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비밀특허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u>국방상 필요한</u>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
<신설>	1. <u>국방상 필요한 경우</u>
<신설>	2. <u>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u>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u>발명이 국방상 필요한</u>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u>전시·사변</u>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② ----- <u>발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u>제1호의 경우에는 전시</u> ----- -----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현재 「특허법」 제41조¹⁾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명자·출원인 등에게 특허출원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허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비밀특허제도를 운영²⁾하고 있음.

이는 특허 공개원칙³⁾에 대한 예외로 국가에 중요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것으로 주요국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비밀특허제도에 따라 국방 관련 출원 중 14건이 비밀취급이 되었음.

3) 특허는 기술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전 세계 공통으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발명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일부 주요국은 군사적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까지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하여 자국의 전략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 안보 및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 전략기술 등에 비밀특허제도 대상으로 추가하여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밀특허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 출원공개 및 특허등록을 유보하는 비밀특허제도를 규정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일본의 경우 국가·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해외출원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2024년 5월 시행)⁶⁾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참고자료 2 참조).

개정안과 같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비밀특허대상으로 포함하

4)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며,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 분야 50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음.

5) 「특허법」 제181조부터 제186조까지

6)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는 경우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함에 따라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발명이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비밀로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외국기업이 먼저 특허를 획득할 경우 수출중심의 국내기업은 수출금지 등의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도 실제로는 국방분야 위주로 비밀특허제도 운영 중⁷⁾인 점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관계 부처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미래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개정안 적용시 기술 수출·협력에 제약이 생기⁸⁾, 보상금 운영에 따른 정부 부담이 증가하므로⁹⁾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산업계¹⁰⁾는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해외출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외국 기업이 먼저 특허를 획득하면 오히려 특허침해라는 대항을 받을

7) (미국) 육·해·공군특허가 93.1%, (일본) 국방분야 중심(+원자력)으로 25개 분야 지정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 있으므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불리하다는 우려를 표명함.

문 의 처
02)6788-5458

1. 비밀특허 제도

□ (개요)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 명령, 해외출원 금지를 할 수 있는 국방상 비밀특허제도 운영중(특허법 제41조, 시행령 제11~16조)

○ (비밀대상) 특허청장-방위사업청장 협의로 정한(시행령 제11조) 국방관련 특허분류*(「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훈령)」)의 군사용 무기 기술

* 항공·잠수함·미사일·대포 등 기계분야 8개, 폭약·기폭장치 등 화학분야 4개

○ (비밀지정) ①출원인이 국방출원 표시* 또는 ②심사관이 국방관련 특허 분류에서 비밀대상 추천 → 방사청 의뢰·결정 → 비밀지정**(시행령 제12조)

* 실무적으로 ADD(국방과학연구소) 특허출원건은 출원시에 비밀등급이 지정되어서 출원됨

** (현황) 최근 10여년간('15~'24) 비밀지정된 건은 14건

- (보상) 출원인 청구에 의해 비밀지정(해외출원 금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 지급주체: 방위사업청[헌법 제23조③(재산권 제한시 정당한 보상)를 근거로 특허법 제41조③(시행령 제14조)에서 지급의무 규정]

○ (해외출원 제한) 국내출원이 국방상 필요에 의해 비밀명령*을 받은 경우, 해외출원이 금지되고 정부 허가에 따라 예외적 허용(시행령 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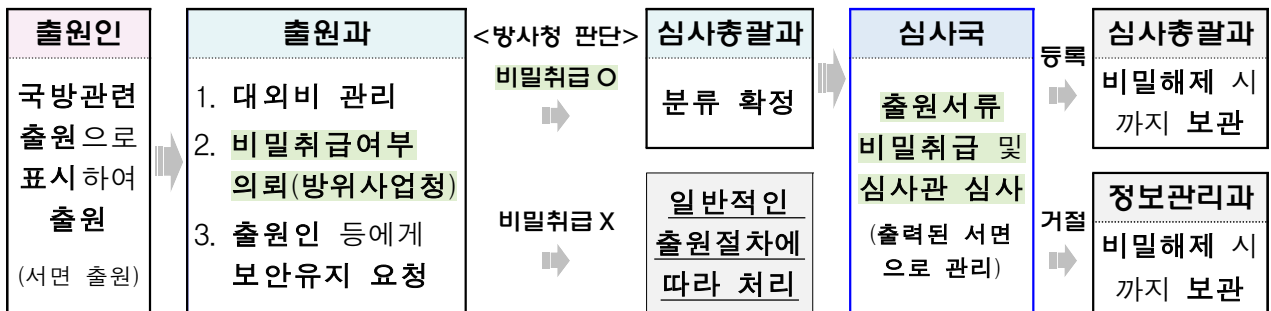
* 실무상 비밀명령과 해외출원 금지 구분 없이 비밀명령(해외출원 금지도 포함 간주)만 발행

2. 국방관련 특허출원 취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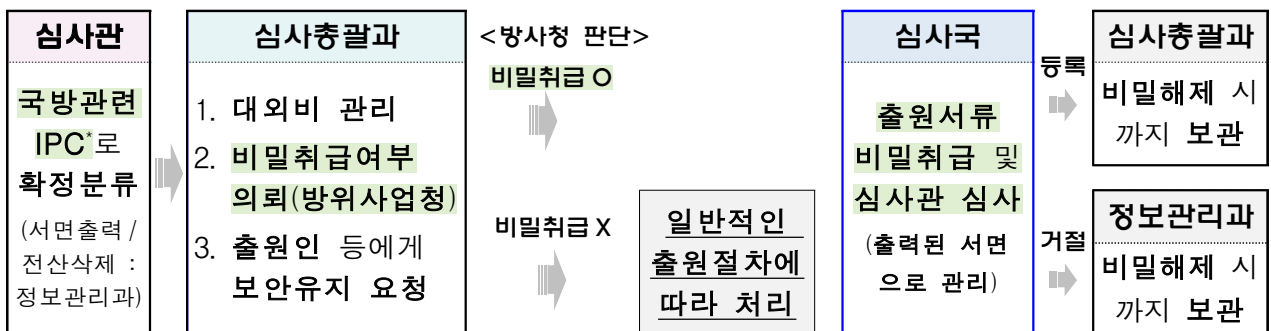
□ 국방관련 특허출원 출원·심사·관리

- (출원) 출원 시 출원인이 국방출원으로 표시한 경우와 확정분류 시 심사관이 국방출원으로 분류한 경우로 나누어 관리

①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표시하여 출원한 경우



② 일반적인 출원 후 분류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가분류한 다음 심사관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확정분류한 경우



* 국방관련 IPC : 항공기 장비, 잠수함, 미사일, 장갑차 등 12개 분류

- (심사) 심사총괄과에서 비밀서류를 일괄 보관·관리하며, 심사관은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시점에 일시 대출하여 심사*

* 심사관은 실제 심사기간만 보관 → 대부분 기간은 각 주무과에서 보관

- 우선심사결정, 착수, 종결 등 모든 심사는 서면으로만 진행

- (관리) 비밀해제, 비밀등급 변경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국방관련 출원의 지속적 점검

참고 2

주요국 비밀특허 제도 운영 현황

1) 미국(특허법)

- (개요)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발명을 비공개하고, 해외출원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운영(美특허법 제181~186조)
 - (비밀대상) 국가방위나 대외 관계상 국가기밀로 분류*된 기술
 - * 무기, 폭발물, 암호, 원자력, 컴퓨터 기술 등(비밀대상 목록(PSCRL)을 규정)
 - (비밀지정)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비밀명령하고, 1년의 기간으로 연장 가능 → 발명을 비밀로 유지*, 출원공개·특허등록 유보
 - * (위반) 특허받을 권리의 포기·무효 간주, 1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현황) 연간 40~100여 건(전체 출원의 0.017%)에 대해 비밀로 지정
 - (해외출원 제한)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출원일 후 6개월까지는 허가(Foreign Filing License)가 없으면 해외출원 금지

2) 일본(경제안전보장추진법)

- (개요) 국가·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 비밀관리 및 해외출원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24.5월 시행)
 - (비밀대상 기술분야) 무기와 관련된 국방관련 기술이 대부분이며,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기술(원자력, 우주항공)도 일부 포함

국방관련 기술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 잠수함, 미사일, 가스탄 등 전통적 무기 기술 • 레이저, 전자기 펄스탄 등 새로운 무기 기술 • 무기와 관련된 무인항공기, 자율제어 기술 등	• 핵연료 재처리, 플루토늄 분리 등 핵기술 • 로켓 엔진, 열보호 등 우주선 기술 • 통신 방해 기술 등

- (비밀지정) 1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하고 1년 이내로 연장 가능 → 지정 시 심사보류, 출원의 취하·공개 등 불가
- (해외출원 제한) 누구든지 일본 내에서 한 발명으로서 비밀대상에 해당하는 발명은 해외출원을 금지*(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으면 가능)

* (위반) 특허출원 각하,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